

## 약관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사채원리금 지급대행 계약서』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(구)하나은행 계약서를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  
(구)외환은행 관련 약관 해당사항없음

개정 전(구. 하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<b>제1조 (대행업무의 수탁) ~ 제7조 (출금계좌 지정 및 담당자 지정)</b> (생략)</p> <p><b>제8조 (지급대행 불능사실 통보)</b> 1. 위탁자가 원리금 지급기일의 영업마감 시각 2시간 전까지 지급할 자금을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때에는 "수탁자"는 지급불능의 사실을 지급보증기관(있는 경우에 한함) 및 수탁기관에 즉시 통보한다.</p> <p><b>제9조(사채권자의 확정) ~ 제16조 (종결업무)</b> (생략)</p>	<p><b>제1조 (대행업무의 수탁)~제7조 (출금계좌 지정 및 담당자 지정)</b> (좌동)</p> <p><b>제8조 (지급대행 불능사실 통보)</b> 위탁자가 원리금 지급기일의 영업마감 시각 2시간 전까지 지급할 자금을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때에는 "수탁자"는 지급불능의 사실을 지급보증기관(있는 경우에 한함) 및 수탁기관(<u>있는 경우에 한함</u>)에 즉시 통보한다.</p> <p><b>제9조(사채권자의 확정)~제16조 (종결업무)</b> (좌동)</p>	<p>(구.하나 약관 준용 _문구정비)</p>